

조례정비 연구회 활동계획

2024. 6.



영등포구의회
(조례정비 연구회)

조례정비 연구회 활동계획

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례의 다양성, 전문성 및 체계정합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, 이에 대응하여 입법·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를 검토·정비하고자 함

I | 설립 근거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II | 활동 개요

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비고
행정위원회	양송이	
행정위원회	우경란	대표
사회건설위원회	유승용	
행정위원회	이규선	
사회건설위원회	이성수	
행정위원회	임헌호	
행정위원회	최봉희	
사회건설위원회	최인순	

- 활동기간: 2024. 6. 19. ~ 2024. 11. 30.

Ⅲ 세부 추진계획

□ 추진방향

- 조례 입안·심사에 대한 이론 및 기법 연구
-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
- 조례 연계 주제 및 사업 발굴
- 우수조례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

□ 추진방법

- 조례 입안·심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
- 조별 모임 및 세미나 개최
- 조례 연계 주제 및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
- 우수조례 사례 탐방 및 간담회 개최

□ 추진일정

연번	구분	내용	비고
1	전문가 간담회	조례 입안·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를 통한 이론적 역량 강화	
2	현장 방문 및 탐방	조례 연계 주제·사업 발굴 및 우수조례 사례 탐방	
3	조별 모임 및 세미나	조별 과제 발굴 및 연습사례 발표	
4	보고서 작성 제출 (2024. 11월 말까지)	연구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	

□ 소요예산: 2,650만원

- 의원 정책개발비: 2,400만원 (300만원*8명)
 -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·연구 등 용역비

- 활동의원 1인당 300만원 책정(의원 개인에게 지급 불가)
- 연구활동비: 250만원
 - 의정운영공통경비(5천만원)의 10퍼센트 범위
 - 단, 각 단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등 지원 가능
- 지원근거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단,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끝.